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0. 30 선고 2023나50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10. 30 선고 2023나50480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8가합65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30.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8가합654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7.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매매를 원인으로 2017. 9. 29.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051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그 가액반환으로 100,1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가액반환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채권자대위청구에 의한 등기말소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토목 공사업,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0. 4.경 청주시 서원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한 후 2000. 9.경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각종 중기 대여,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2. 22.부터 2015. 8. 10.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의 형이고, 피고는 2001. 1. 4.부터 현재까지 D의 감사,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H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3.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12. 11. 12.부터 2013. 6. 13.까지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7. 9. 27.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원고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할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20.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17. 12. 20.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2,344,568,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원고는 C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증거로 D 채무금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갑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확인서의 하단에 '연대보증인 C'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 '대표이사'라는 부동문자 옆에 작성일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M'의 서명이 있으며, 그 서명 옆에는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의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이 사건 확인서의 'M' 서명은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M' 서명의 필적은 을 제11호증 확인서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M에 대한 진술조서 등 다른 서증에 기재된 M의 자필서명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다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M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고 그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덤프트릭 운전기사인데 H의 요구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대표이사 직위에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의 M 서명이 M이 직접 자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에 날인된 C의 인영 역시 그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명의의 서명이나, C 인영의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당심 제5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필적은 M의 필적이 아닌 원고 자신의 필적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한편, 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확인서 외에도 'C 이사회회의록(이하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고, 거기에는 C이 2014. 7. 8. '회사 경영자금으로 차입된 금원의 채무금액 확인'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가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대표이사 M이라는 부동문자 옆에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안건의 내용인 '회사 경영자금으로 차입된 금원의 채무금액 확인'을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M은 이 법정에서 '이사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로서 위 이사회를 소집한 적도 개최한 적도 없고, 의사록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다', 'C의 대표이사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C이 연대보증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 역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채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위 아파트 세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해당 아파트

세대가 타에 양도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해행위임이 문제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판단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5) 소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자력 유무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우선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진석

판사 김형식

판사이무롱

별지